

2021

지역형,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설명회





CONTENTS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해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제4장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절차

제5장

예비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제6장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 1 사회적경제란?
- 2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 3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역사

- ✓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
- ✓ 국내의 경우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사회적경제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발전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지역 쇠퇴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정의

- ✓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
- ✓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 캐나다 퀘벡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국내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의(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중심으로)

-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윤호중 의원(2016), 양경숙 의원(2020) 대표 발의(안)]
- ✓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유승민 의원(2016) 대표 발의(안)]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과 주요 주체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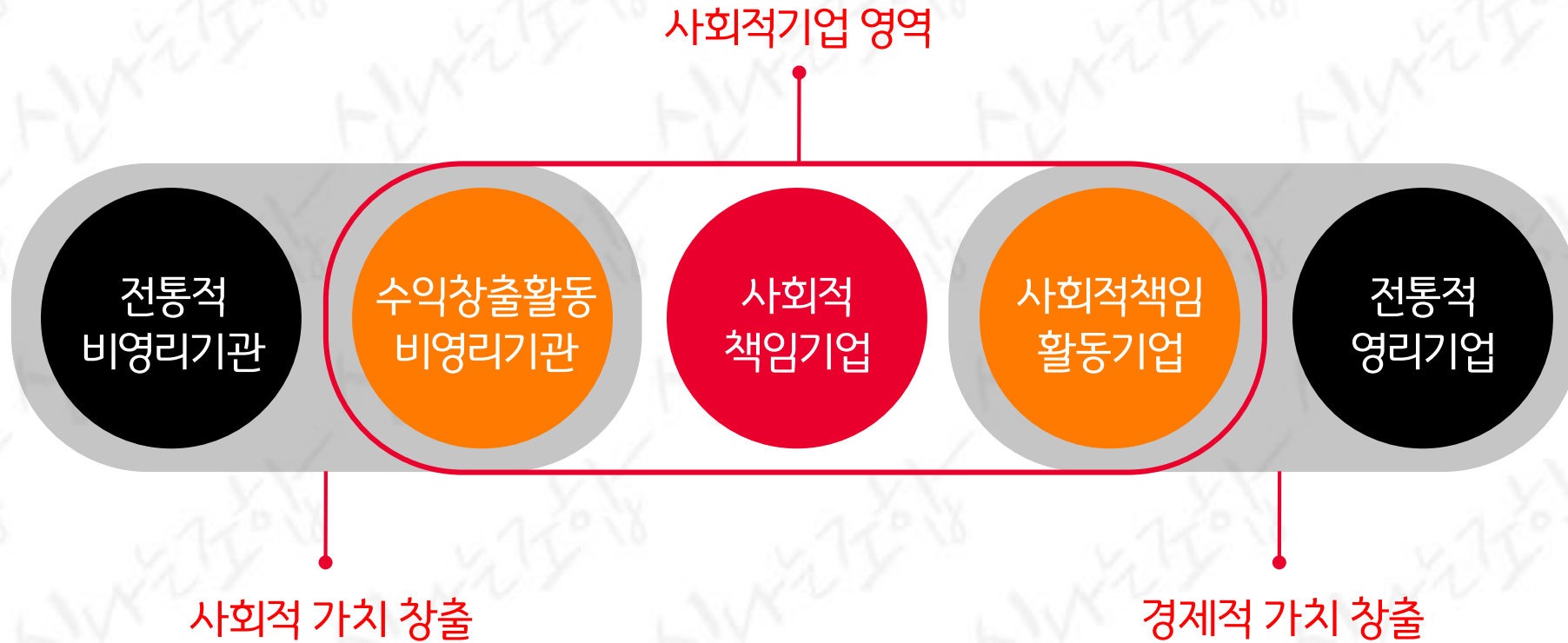
- ① (공익성)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 ② (자율과 독립성)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 ③ (민주적 통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④ (잉여금의 분배 제한) 발생한 이익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 ⑤ (상호성)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격부여	기업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 부응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
관 련 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중간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획재정부 지정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행정자치부 지정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
비 고	- 배분 가능 이윤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부처/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 일반협동조합(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5인일 경우 100%)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이상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이해

- 1 예비 사회적기업의 개념
- 2 사회적기업의 제정배경
- 3 사회적기업의 정의
- 4 사회적기업의 의의
- 5 사회적기업의 단계
- 6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 7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의 개념

법인설립

민법상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자조합 등)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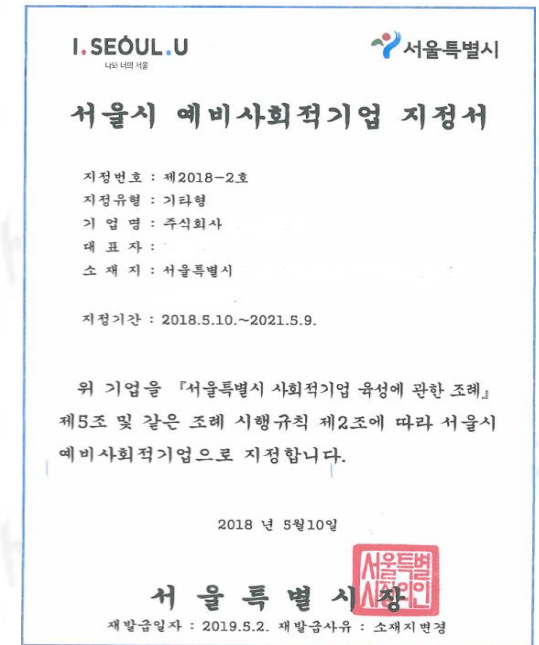


5가지 요건

- 1 조직형태
- 2 사회적목적 실현
- 3 영업활동 수행
- 4 정관·규약 등 구비
- 5 (상법상회사) 이윤의 재투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 사회적기업 : 전월말 실적 기준 (*1개월 미만 법인은 사업 계획만 제출)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중에는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자치광역단체장·정부부처장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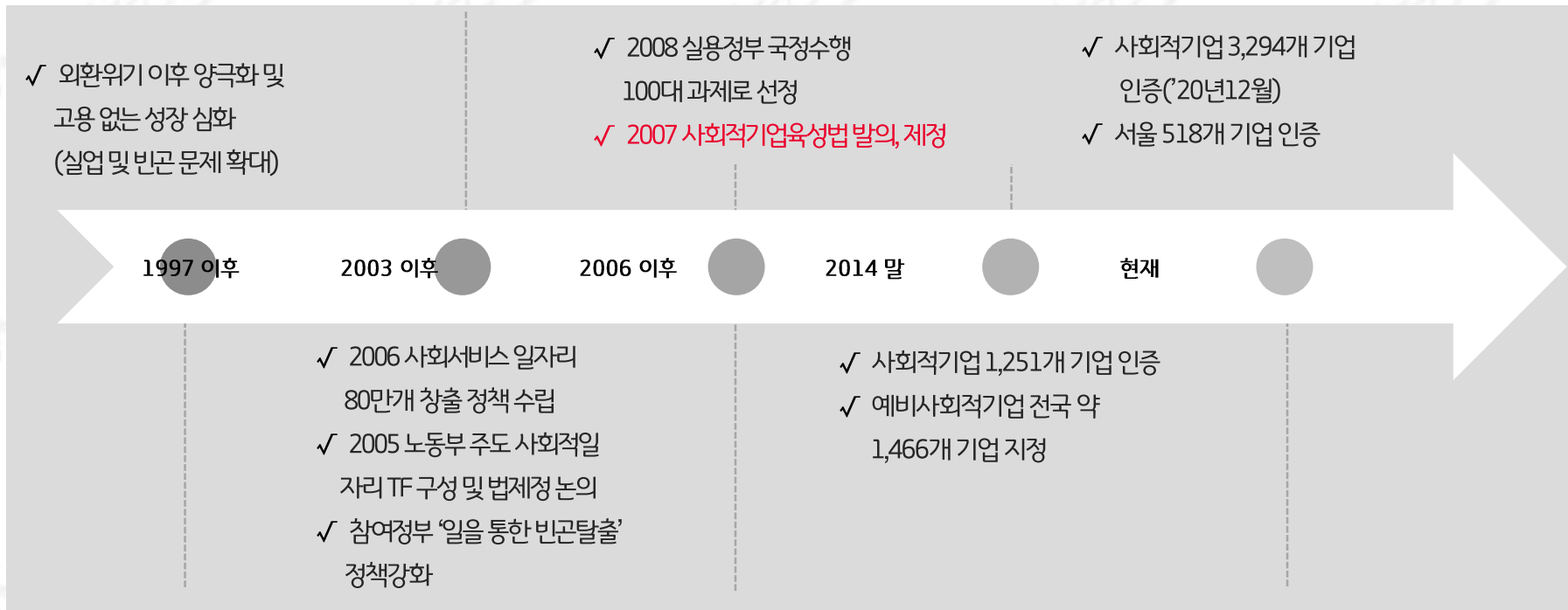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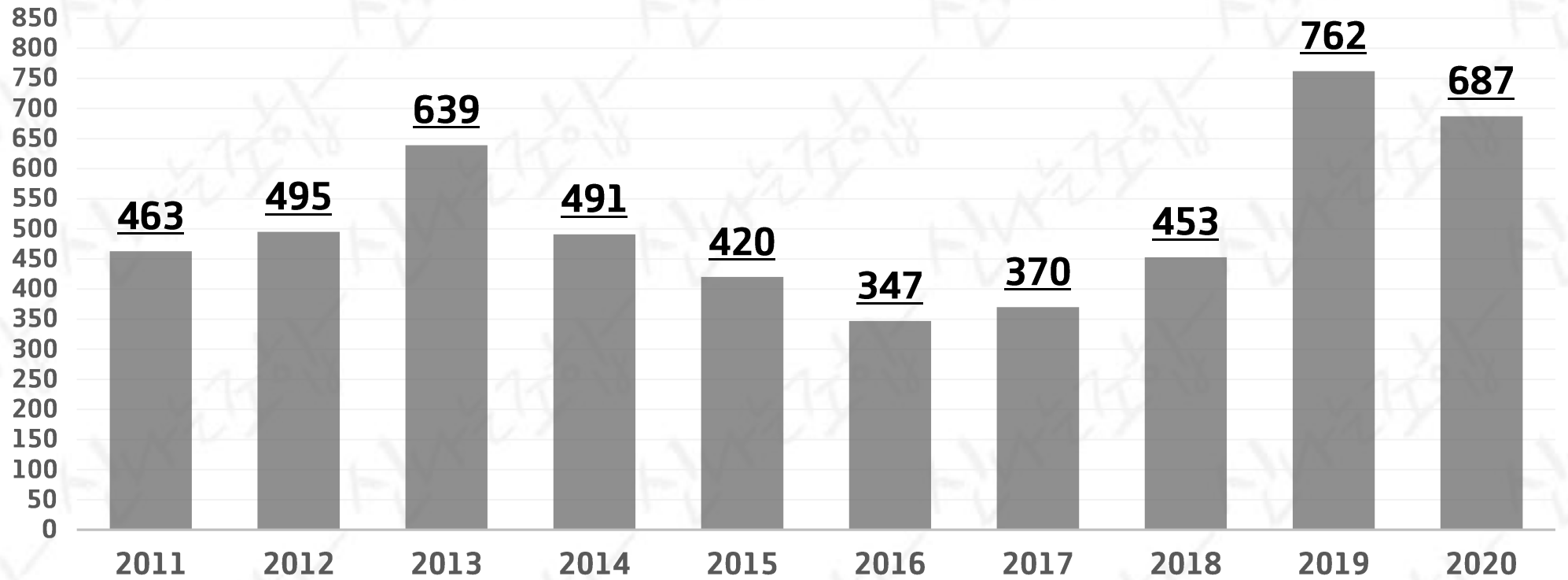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제정배경

-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저성장 경제발전기 도래
-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급감
-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 내수 활성화의 기반인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 및 사회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지불능력 확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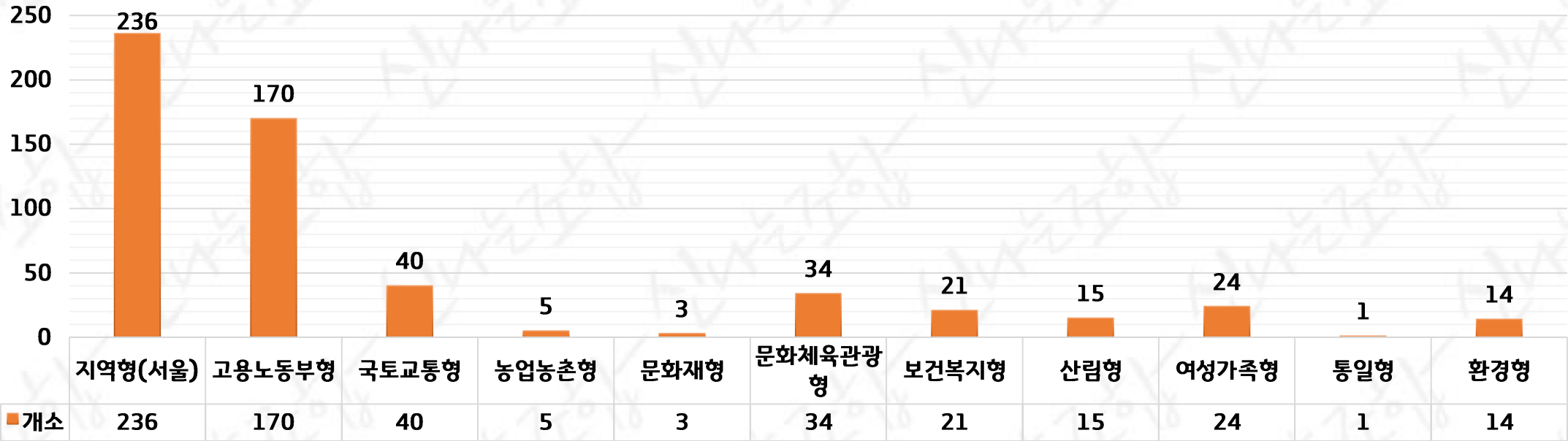
연도별 전국 지정 현황(지역, 부처)



(단위: 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현황



서울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유형별 현황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76	36	12	10	366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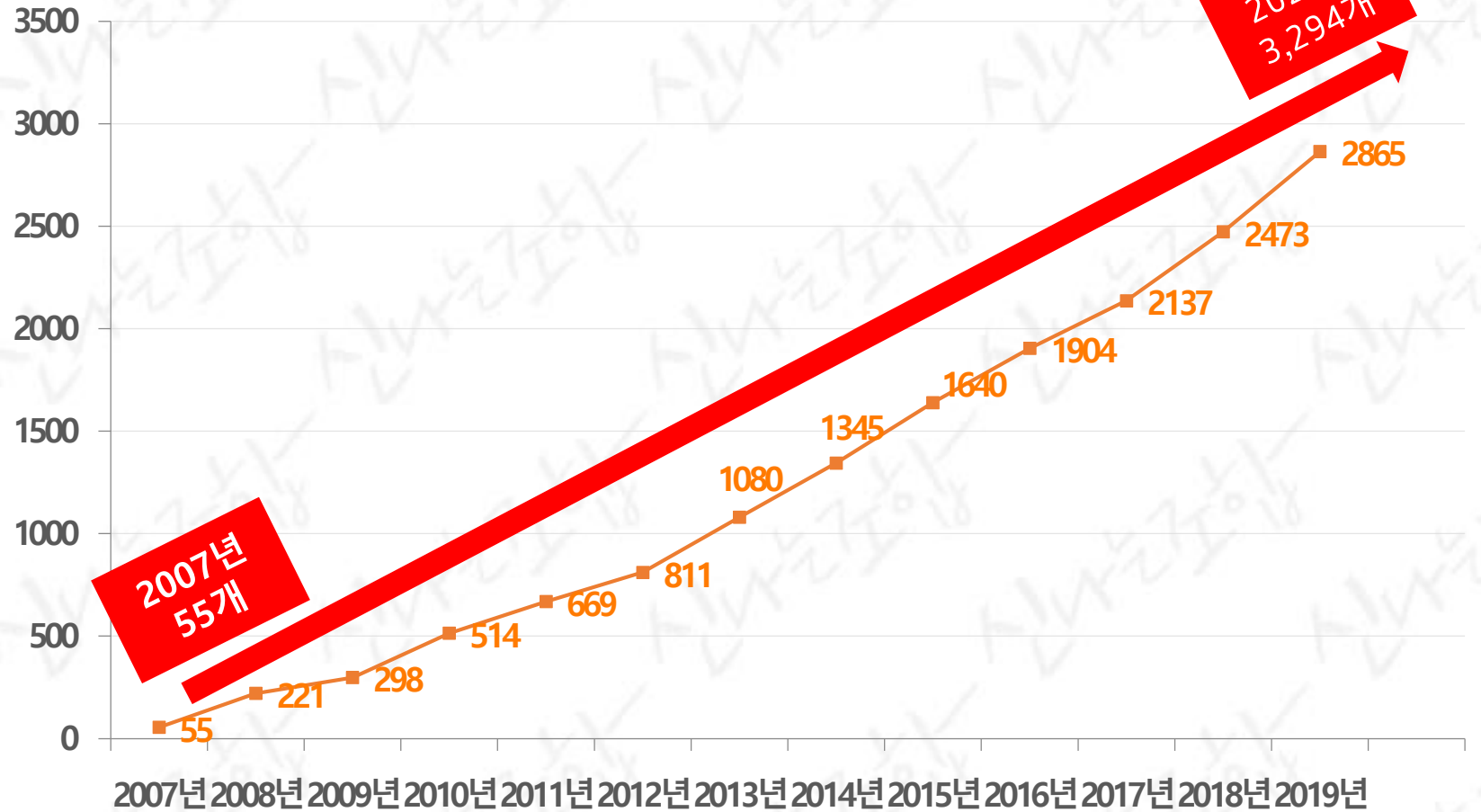
2020년 12월까지 73차에 걸쳐



총 3,294개 인증



총 2,777개소 활동 중



(단위: 개소)

사회적기업의 단계

예비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기업을 지정 →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이 가능한 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근거: 정관 및 사업계획서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님

지정

-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
- 부처형 : 정부부처장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
 - ✓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근거: 인증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
- *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시 해당 기간만큼의 실적 기준

인증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주관	(지역형)광역자치단체장, (부처형)중앙부처장
① 조직형태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일자리제공형 외 4가지유형: 전월말기준 1명 * 일자리제공형: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일자리제공형 외 4가지유형: 유급근로자 없어도 가능 *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1명 이상 고용
③ 사회적 목적 실현 (계량화된 실적: 신청 직전 6개월간 실적) * 영업활동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실적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및 사업계획/기존실적도 참고)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가 1명일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2명 이상일 경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신청월 직전 6개월 실적 증빙		⑤ -
⑥ 정관, 규약을 갖출 것 *정관은 접수 마감일 까지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⑥ 정관, 규약을 갖출 것 *정관은 접수 마감일 까지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⑦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⑦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연6회 심사(짝수달)	신청	(지역형) 연중 1~2차 일정 공고(서울시의 경우 3월, 9월 전후) (부처형) 부처별 공고시기 상이함
-	자격기간	3년

지역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 도입배경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내실화 및 사회적기업 확산 기반 마련
(*11.6.9,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 ✓ 2012년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기로 결정

관련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특성에 맞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가능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 안됨 = 지역 + 부처, 부처 + 부처 중복 불가)

지정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

부처형 : 정부부처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 지정일로부터 3년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 합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별 지정가능한 사업내용 (10개 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2020년 기준 상시접수 (4월, 7월, 10월/ 심사 3회)	✓ 읍, 면 단위의 농촌지역 ✓ 농촌 체험, 농 특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산림청 *2020년 기준 3차 (2월, 4월, 9월)	✓ 임업분야(임산물 재배 유통 가공) ✓ 목재, 수목 관리, 조경 ✓ 숲 체험 ✓ 산림 환경 등
문화재청 *2020년 기준 4월	✓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 ✓ 문화재 위탁 관리 및 보존 사업	여성가족부 *2020년 기준 9월	✓ (경력단절, 결혼 이주) 여성 관련 ✓ (학교 밖) 청소년 ✓ 가족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 사업
보건복지부 *2020년 기준 6월	✓ 자활사업 ✓ 바우처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통일부 *2020년 기준 1차(8월)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9월	✓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환경부 *2020년 기준 5월	✓ 환경교육 ✓ 친환경, 재활용 상품 ✓ 에너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9월	✓ 국내/외 문화교류, 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 ✓ 창작, 콘텐츠, K-POP 등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국토교통부 *2020년 기준 2차 (6월, 12월)	✓ 국토교통 분야 ✓ 도시재생 ✓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9월	✓ 스포츠사업, 체육, 스포츠창업, 경기장 ✓ 유망기업 육성, 이스포츠 등 체육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 *상시접수, 심사 2회 (2020년 기준 7월, 11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성공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중 요건을 갖춘 팀만 신청가능

제3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1 조직형태
- 2 영업활동 수행
- 3 사회적목적실현
- 4 정관·규약 등 구비
- 5 (상법상회사) 이윤의 재투자
- 6 지역, 부처형 사회적목적 유형별 사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영업활동 수행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3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기타(창의·혁신)형

#4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5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역형 -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에 위치한 기업

부처형 - 각 부처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 예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출자 또는 출연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따른 법인으로보는 단체(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 공통사항
주주명부	

* 불인증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서류 준비시 주의점

- ✓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
 - 영리조직은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
 - 비영리조직은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은 포함하나, 지부·지회는 제외
- ✓ ① 대표자가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 ✓ ② 대표자 및 대표자가족 등이 동종 업종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협동조합 등 특수한 조직형태의 경우는 동일한 대표자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

신청기업의 독립성 여부 판단 시: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단,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신청 직전월 분 작성제출
근로계약서		- 신청 직전월의 모든 근로자
급여대장		- 신청 직전월 분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보험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고용보험가입자, 상실자 조회 서류		- 고용보험 인터넷조회(total.kcomwel.or.kr)
취업규칙	매출액이 있는경우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노동청 신고 필수
재무제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합계표 등		- 재무제표 확인서(전문가 확인원/갑지)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

연번	근로자명	출생 년도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시간 (주단위)	비고
1	홍길동	1975	남	장애인	2012-05-01	2016-03-25	40	일반
2	사오정	1982	여	일반인	2015-08-15		40	전문인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서류 준비시 주의점

근로계약 및 급여 문제

-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연도별) 이상의 급여지급
→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
- ✓ 대표자는 시급제로 계산할 시에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 ✓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내용 등 근로기준법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준수
-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누락 없이기재
→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일별근로시간

2021년 최저임금 금액

시급	일당	월급		
		주40시간(월209시간)	주20시간(월105시간)	주15시간(월78시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915,600원	680,160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형	내용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①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20% 이상 ②, ③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기타(창의·혁신)형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의 판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판단근거?

-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기존실적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일자리제공 실적 인정기준

-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대표자 및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무급/유급 자원봉사자는 유급근로자에서 제외)
-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사유 확인
- 취약계층 의무 고용비율(30%)에 관참은 일자리 제공

* 관참은 일자리란?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 여부로 판단
관참은 일자리 제공 실적 외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노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

$$\text{취약계층 고용비율} = \frac{\text{신청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합}}{\text{신청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수의 합}} \times 100$$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취약계층 인정기간

취약계층 자격이 변동 가능한 유형(청년·경력단절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
유급근로자 명부	- 신청 직전월 기준 참고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류	-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확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3개월 이내 퇴사자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1

구분	판단기준						증빙서류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소득금액증명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년 ¾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장애인	신체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 복지카드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성매매 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경력단절여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3호, 2017.11.8)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경력단절여성 :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2

구분	판단기준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지원 확인서
범죄구조 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6개월 이내 출소자, 6개월 이내 소년원 퇴원자 - 보호관찰 청소년 - 노숙인 - 약물, 알코올, 도박 중독자 -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난민 - 보호종료 아동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 <신설> 난민, 보호종료 아동 - 난민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전체 서비스 제공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서비스란?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일 경우에만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증 신청 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
-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취약계층 수혜비율 산정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text{신청 직전월까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text{신청 직전월까지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취약계층 + 일반인)}} \times 100$$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취약계층 인정범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요건과 동일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일자리제공형에서 인정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로 인정
 - + 조손가정
 - + 외국인근로자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 + 학교폭력피해자
 - + 학교밖청소년
 - +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중증질환자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변경되어 적용 예정인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중증질환자 판단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관련 내역 증빙서류	-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인원, 횟수, 금액 등)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예시]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서류 준비시 주의점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

- ✓ 서비스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
- ✓ 사회서비스 실적의 기준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횟수, 시간, 수혜 인원, 금액 등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전체 10명에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총 100시간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총 100회 서비스 제공 시 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인정기준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실적 인정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실적 인정 기준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 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참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 적용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

가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지역의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지역은 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가능.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상호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가능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지역의제 확인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자원 연계활동 가능
-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만 위치할 경우 불인정
- *사업추진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서에 기술

실적인정기준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적용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관찮은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 지역취약계층 고용 비율(20%)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20%)을 충족하면 이 유형으로 인정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역사회공헌형”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지역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유형 및 거주지 - 취약계층 고용 비율 충족 여부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매월 말일 기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파악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 관련 증빙서류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충족 여부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과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 의제 설정 및 해결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 차별화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금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3-4 지역사회공헌형 다-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말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기법을 개발, 적용하여 해당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매입액) 또는 수입(매출액)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회계서류	- 지역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을 지원한 사업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 금액
수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	- 수혜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임을 확인하는 서류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예시>

- (취약계층 지원) 당해기업이 취약계층 고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취약계층 편의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개발, 생산,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하는 경우
-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기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직의 설립취지,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취약계층의 참여 및 지원정도, 지역사회 기여 및 공헌도,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증빙서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적합 여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법정사항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01 설립목적

법인 설립목적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목적이 명기되어야 한다.

02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03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증빙서류

증빙서류	비 고
조직형태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필요 (다만,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공증 불필요→ 제·개정 허가 공문 제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규약(운영규정)	

*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료실에서
조직형태별 정관샘플
다운로드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정관 상의 명시

- 정관 ‘이익금의 처분’ 관련 조항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 규정
- 정관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에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 규정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서류 준비시 주의점

정관 예시

- ✓ 제00조 (이익금의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 3. 주주배당금
 -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용(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2. 지역사회기부 등 사회공헌사업비
 -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
- ✓ 제00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지정 심사기준

0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복지 · 환경 · 문화 ·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0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은 각 부처별 소관업무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주 서비스 제공대상에 해당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예시] 1. (여성가족형)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자립지원

2. (국토교통형) 사회주택 건설·미운영관리,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체 복원/ 지역문화재생, 도시재생 사업

3. (보건복지형) 보건, 보육, 돌봄, 사회복지 등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4. (문화체육관광형) 지역주민 대상 체육프로그램 제공 및 스포츠 시설 위탁운영, 지역주민 대상 역사탐방 여행 서비스

03 심사위원회를 통한 판단

1. (지역형)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 내용의 우수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2. (부처형) 각 소관 부처 사업의 관련성은 직간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04 지정제한

1. 지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 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2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정관의 필수사항

#5 이윤의 재투자

#6 지역, 부처형 요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8.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9시간 이상 이수 필수(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e-러닝'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주식회사 우리셀프빨래방협동조합

2019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제공형) 지정

- 사회적 목적: 빨래방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세탁대행 사회서비스 실시
- 비즈니스 모델: 저비용, 저수익 추구형 빨래방 개설 및 운영
 - 노인복지관, 지자체 체육관, 노숙자 수용시설, 육아보호시설
 -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제공으로 세탁물 수거배달 전문 지원단 운용



깨끗한 믿음과 함께하는
Washcoop



거품없는 창업
Washcoop



장비소개

위시쿵은 세계적으로
인증된 브랜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픈) 위시쿵 경기 수원시 권선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4번길 33, 102호(권선동)
01088870355



(오픈)위시쿵 충청북도 진천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중앙서1길 6-5, 102호
010-5491-8543



(오픈) 위시쿵 서울 중곡1동점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62길37, 1층
010-4798-8251

파란동그라미 협동조합

2018년 보건복지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제공형) 지정

- 사회적 목적: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갤러리 힐링카페 운영
- 비즈니스 모델: 카페 운영 및 복합 공간 운영 및 수공예품 판매사업
 - 바리스타교육 및 훈련 사업
 - 갤러리 대관, 카페 공간 대여, 수공예품 온·오프라인 판매 사업



주식회사 위코노미

2019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제공형) 지정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대상 금융자립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비즈니스 모델: 금융 취약계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내 시설보호종료아동, 퇴소 청소년 자립, 금융교육서비스 제공
 - 진로, 진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 서울시 복지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등 분야별 네트워크 확보



아동권리보장원

시설보호종료(예정) 아동 자립교육 등

시설보호아동의 퇴소 전 자립교육
금융, 주거, 복지지원 등 8대 영역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표준금융교육 6단계 개발

청년의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과정
커리큘럼, 교수설계, 온라인교육과정제작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2020 ~ 2009)
· 희망두배청년통장 (2020 ~ 2016)

I. SEOUL.U
나와 너의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8,689+

취약계층 교육 수혜자

- 2020 기준 -



5.8억

사회적가치 누적 창출
금액

- 단위 : 원 -



8

비대면 교육 위탁공공
기관 수

- 2020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 커리어 코칭

2018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제공형) 지정

- 사회적 목적: 저소득 소외계층·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진로설계 및 학습지도, 직업 체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커리어액터 전문가 양성 등 역량강화 교육, 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회 제공
- 비즈니스 모델: 청소년, 성인, 시니어 대상으로 교육 및 위탁사업



소통과공감 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혼합형)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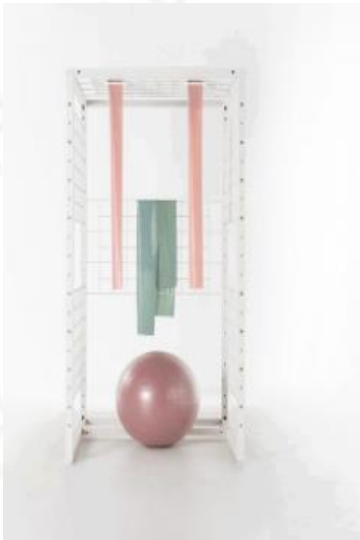
- 사회적 목적: 학습이력관리 코디네이터 및 마을학교 강사 교육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 및 학습코디네이터를 통한 계층,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 비즈니스 모델: 세계시민교육, 토론캠프운영, 학습이력관리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매출 발생
 - 교육 강사 양성 후 방과후마을교육 및 토론, 세계시민, 진로진학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



주식회사 좋은 운동장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혼합형) 지정

- 사회적 목적: 장애아동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및 생활체육 연구 개발로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비즈니스 모델: 직접 개발한 운동 장비 판매 및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동 대상 홈트레이닝 운동장비(조인트 설치), 홈트레이닝 트레이너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뇌병변, 척추장애인들을 선발하여 근로자로 고용



숲속마을 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형(가)) 지정

- 사회적 목적: 북한산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80%
- 비즈니스 모델: 숲속마을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및 지역공동체 복원 및 취약계층에게 지역 관련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제공

2020 방학동 숲속마을 복합문화공간 작가 공모

북서울 끝자락에 위치한 방학동 숲속마을은 서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숲속마을의 공간은 총 3층의 건물로 1층에는 카페와 갤러리, 2-3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활동공간, 옥상 테라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학동 마을 안 아늑한 공간인 숲속마을에서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만의 멋진 작품세계를 펼쳐 주실 젊은 예술가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대상

1. 국내외 작가를 꿈꾸는 대학(원)생
2. 20-30대 젊은 예술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forestvillage15@gmail.com

공모주제

평면/사진/판화/드로잉 등 회화분야

제출서류

공모지원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자유형식)

접수기간

2020.02.04 ~ 2020.02.14

지원내용

1. 전시공간 지원 (숲속마을건물)
2. 작가워크숍 공간 지원 (선택)
3. 전시 전경 촬영 이미지 제공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2018년 국토교통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형(나)) 지정

- 사회적 목적: 종로구 세운상가 재생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전체 매출의 73%
- 비즈니스 모델: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재생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사업을 수행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운상가 내 입주자 및 입주기업 조직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형(다)) 지정

- 사회적 목적: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서비스 매출 100%
- 비즈니스 모델: 스토어 36.5 노원점,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금 운영, 조합원 교육, 프로보노 지원사업, 공공구매 사업 수행



주식회사 블루레오

2019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기타(창의·혁신)형) 지정

- 사회적 목적: 수분(타액)흡입 기능이 있는 전동 칫솔 생산을 통한 뇌성마비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증진
- 비즈니스 모델: 흡입형 전동칫솔 종류 판매
 - 10단계로 세분화된 진동단계 선택 가능
 - 분당 500ml 양치물 흡입
 - LED 라이트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전동 흡입 칫솔 G100

전동 흡입 칫솔 G100은 양치물 흡입과 음파진동 기능을 통해 양치물을 스스로 빨지 못해 불만을 겪는 장애인, 환자, 유아, 노인들의 위생적인 구강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흡입량 500ml/min(±25%)

음파진동 14,000rpm(±20%)

점액식 용기 700ml



승일희망재단

2020년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기타(창의·혁신)형) 지정

- 사회적 목적: 루게릭 병 등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 및 전문 요양을 위한 의원, 노인요양시설(루게릭요양센터) 개설·운영
- 비즈니스 모델: 요양시설 설립을 위해 기부상품 판매(팔찌, 발찌, 뱃지, 의류, 잡화 등)



공식병명

- >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 > 일반적으로 루게릭병으로 알려짐
- > 루게릭병 질병 코드 G12.21, 산정특레코드 V123

병의 증상

- > 운동신경세포만 점차 소실되어 급격한 체중감소와 근육의 위축, 사래 걸림, 사지마비, 언어기능 상실, 음식물 섭취 기능 상실, 호흡근육의 악화로 결국 호흡기에 의존하게 됨
- > 인지능력과 감각신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지대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마치 가위에 눌린 듯한 상태임
- > 눈 깜박임은 미약하게라도 끝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가능함

주식회사 몽세누

2019년 환경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기타(창의·혁신)형) 지정

- 사회적 목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폴리에스터와 혼방 섬유로 원단을 개발
- 비즈니스 모델: 플라스틱,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단 개발함으로써 의류 및 패션 아이템을 제조하여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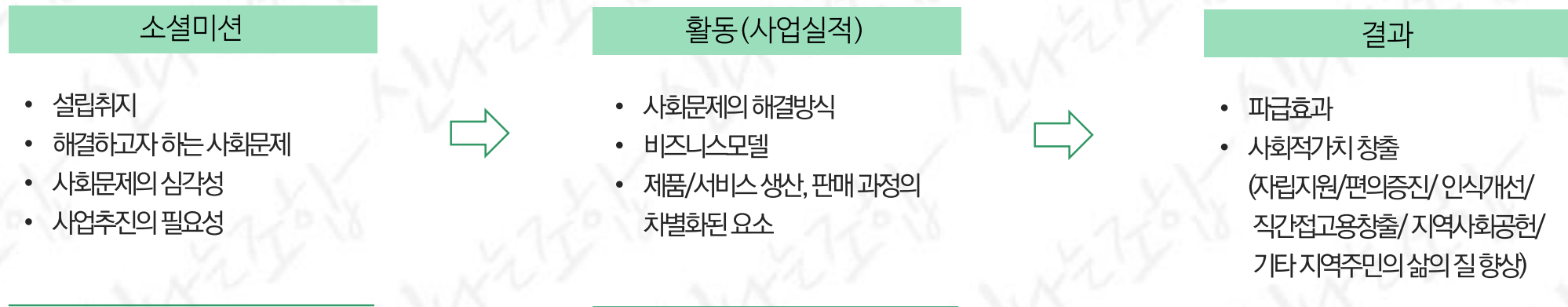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제2호의2~6서식】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붙임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⑦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확인(세무서, 세무사) <필수제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세무서)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 수익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영업 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기간)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⑧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해당기업만)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서류 접수 보완 마감일까지 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도 반드시 함께 제출(신청기관명과 사업자등록증상 명칭이 일치하여야 함) ※ 불인정 사례: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협동조합신고필증 등만 제출한 경우 불인정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⑨ 마을기업 · 부처형 · 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 상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역형 지정기간에 합산함
⑤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해당기업만)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7서식】 및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 고용보험가입자·상실자 조회서류 ※ 신청월 직전 1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파악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 (total.kcomwel.or.kr)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	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⑪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러닝’ 메뉴에서 수강(지역형의 경우,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회계 및 노무관리 9시간 / 부처형의 경우,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5시간)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서류 보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불합)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서식】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사회적목적에 따른 사업 = 사업수행, 매출발생 >>> 그 결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



✓ 모든 사업 실적과 결과를 서류로 증빙 (결과보고서, 계약서, 실적확인서, 보도자료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
- 문제해결 필요성

사업내용

- 우리 사업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내용(제품/서비스, 가격 등)
- 사업내용이 1개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
- 주요 거래처 및 향후 판매-거래처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일자리제공형

-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 수행업무, 취약 계층 투입계획, 필요역량, 구인계획, 유지가능성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가치(공공성)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 방법/ 수행인력/ 장소 등)

혼합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동일

지역사회공헌형(가/ 나/ 다)

-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특산물/특화사업 및 지역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계획(인력, 사업, 자원)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취약계층, 지역사회 기여 가능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심사기준(주요 미지정 사례)

조직형태	▪ 대표자가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동일업종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및 사업장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조직형태의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유형	▪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주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유형에 맞는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모델과 다른 유형을 신청한 경우 (기타(창의/혁신형)) 일반 사기업과의 차별성 부족, 기업에서 인식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도
영업활동 실적	▪ 사업이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 기부금, 후원금 위주로 자체 수익모델이 없는 경우 ▪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
기타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 ▪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미흡

제4장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절차

지역형 vs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 01 지정 계획 공고 — 서울시
- 02 신청서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03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 —
 - ✓ 관할 자치구
 - ✓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 (신나는조합)
- 04 서면심사 — 서울시
- 05 대면심사 — 서울시
- 06 자치단체장 승인 — 서울시
- 07 지정서 교부 — 서울시 / 관할구청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01 지정 계획 공고 — 개별부처
- 02 신청서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03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 —
 - ✓ 개별 부처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거점전문기관 (신나는조합)
- 04 서면심사 — 개별부처
- 05 부처장 승인 — 개별부처
- 06 지정서 교부 — 개별부처

제5장 예비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1 예비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2 사업보고
- 3 인증취소
- 4 인증서 반납

예비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0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역,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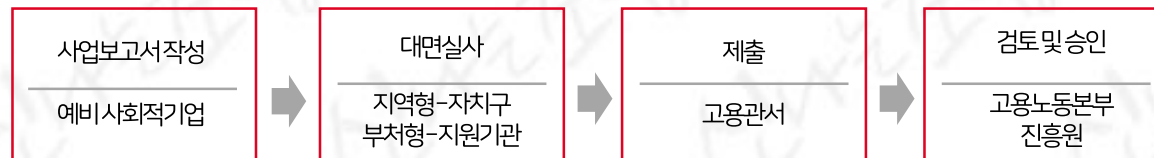
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0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할 의무가 있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예비사회적기업 연 1회/ 지역, 부처형 5월)**



04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실현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도전과 투자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

사업보고 내용

STEP.01 기업현황	STEP.02 민주적의사 결정구조	STEP.03 사회적 목적 재투자	STEP.04 재정성과 및 지원내역	STEP.05 고용
STEP.06 사회서비스 제공	STEP.07 지역사회 공헌/기타	STEP.08 정관 · 규약	STEP.09 연계현황	STEP.10 첨부서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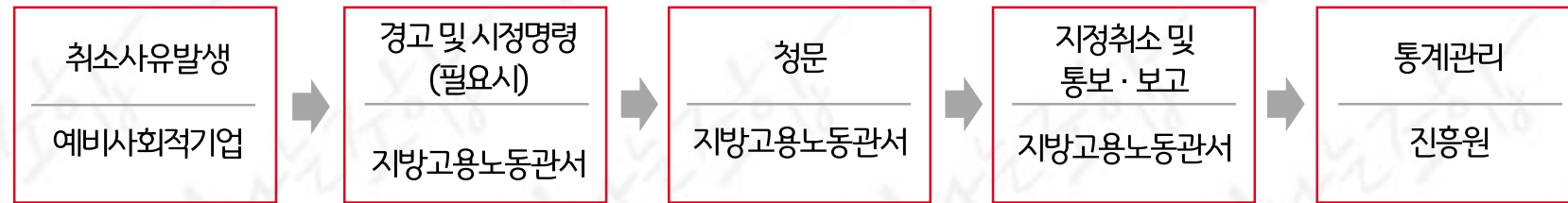
- #1 의사결정구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진행한 회의 실적(해당사항 있을 경우)
- #2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3 재정성과 및 지원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및 영업 외 수입 등 재무현황
- #4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주 사업을 통해 추진한 실적
- #5 정관 · 규약 정관 변경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취소

|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

| 시정명령 절차



| 지정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 절차(제22조)를 거쳐야 함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

지정서 반납

| 근거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 1항 제4호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할 수 있음

| 반납

- ✓ 경영악화 등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만료

- ✓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기초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전환을 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조치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기관' 컨설팅 연계 등 지원

인증 미전환 사유

1. 폐업, 2. 경영부진, 3. 인증전환요건 미충족, 4. 인증준비, 5. 인증받지 않아도 자생력 충분, 6. 고용유지 어려움

제6장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2 직접지원

3 간접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01 직접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4대 사회보험 지원
- 세제지원

02 간접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 판로개척
- 자원봉사(프로보노)
- 경영컨설팅
- 융자 등 금융지원

03 기 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 각 지원은 개별로 사업공고 → 신청 →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함

직접지원

(’19년 이후 인·자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부담 -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 3년 자부담률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 2년 자부담률 1년차 10%, 2년차 20%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연간 1억원 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자부담률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이상 30%	
사회보험료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한도: 최대 50인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4년	해당없음

*** 각 지원은 개별로 사업공고 → 신청 → 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각 지원별 공고문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함**

간접지원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 세무 / 노무 /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컨설팅: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멘토형 등 - 전문컨설팅: 지속성장형, 공동형, 특화형	- 기초컨설팅: 총 3회 - 전문컨설팅: 총 5회 (지원횟수에 따라 자부담률 차등 적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 중소기업제품 촉진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38개소(20년)	0	해당없음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0	해당없음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 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0	0

THANK YOU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본관200호
02-365-0330
www.joyfulunion.or.kr